

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13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0. 13

(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사회복지과장 정 이 환

나. 제안사유

- 보육위원회 간사를 보육담당으로 개정 (안 제7조)

다. 주요내용

- 보육위원회 간사를 별정6급에서 보육업무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함
(안 제7조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조례안은 보육업무담당이 별정 6급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임.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간사는 보육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부 치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간사) ①(생략)</p> <p>②간사는 보육업무담당 별정6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7조(간사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간사는 보육업무담당 6급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